

건교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입법 예고

**근로자 임금보호 등 건설산업 경쟁력
지율성 강화**

일반·전문 건설업간 겸업제한 제도가 폐지되고 건설 근로자의 임금지급을 보장하는 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제도를 폐지하고, 하수급인과 건설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등 건설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건설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자율성 확보를 위해 건설업체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업역 선택이 가능하도록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능력 있는 전문건설업체는 일반 업종을 등록해 시공 계획·관리를 포함한 전체공사를 수주·시공할 수 있게 됐으며, 일반건설업체도 전문 건설업 영위를 위해 편법으로 별도 법인을 설립, 운영하던 폐해를 줄일 수 있게 됐다.

또 편법적인 다단계하도급을 방지하고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보장을 위해 시공참여자제도가 개선된다. 소위 건설현장 십장이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고 근로자를 고용해 시공하거나 다시 불법으로 재하도급 함에 따라, 임금체불과 다단계하도급의 문제점이 있는 시공참여자제도를 폐지된다. 앞으로는 건설업체가 성과급·단기계약 등으로 근로자를 고용해 시공토록해 건설근로자 임금이 시공참여자

제도를 활용한 편법적인 하도급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 건설업체 부도시 하도급 대금을 발주처에서 직접 지급 하도록 해 하도급 대금에 대한 가압류로부터 보호하고, 건설기계 대여·자재납품 업자도 하도급업자와 같은 수준으로 대금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공사대금을 미지급하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부도, 파산, 3자 합의, 연체 등의 경우 발주자가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덧붙여 건설 근로자가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급계약서에 사회보험료 반영을 의무화하고, 납부 후 잔액은 사후에 정산토록 했다. 또 건설산업의 부조리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 등이 건설업자의 뇌물수수를 발견한 경우에 등록관청에 통보해 처분 조치하고, 건설업체에 대한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정보를 금융기관, 신용정보기관 등과 공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특히 허위등록, 등록증대여 등 무자격 건설시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그동안 1년이던 징역형을 3년 이하로 늘리고 벌금은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또 불법 재하도급과 건설업 등록증 대여를 알선한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과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또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검토, 관리를 위해 건설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토록 했다.

이에 따라 발주자는 사전에 하도급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고, 당초 계획대로 이행되었는지를 정보망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도급정보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건산법 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기간(7. 25 ~ 8. 14)동안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등 정부 내 입법 절차를 거쳐 10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건설전담재판부를 찾아서

감정서 보통 1000페이지... 기록검토에 '뜬 눈'

'각종 건설 사건 판단은 우리가 책임진다'

서울중앙지법 건설전담재판부 판사들은 올 여름도 '기록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건설전담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전담재판부중 규모가 가장 크다. 그만큼 전체사건에서 건설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에는 합의부 22개, 단독 27개의 전문재판부가 있다.

이중 건설사건 전담 재판부는 모두 10곳. 민사 19·23·24·27·28·29부와 21·22·44·45단독 등 모두 10개의 재판부가 있다.

각 재판부에 배당된 건설사건은 평균 90여건 정도로 알려졌다. 전담재판부제도가 처음 도입됐을 당시엔 2개 재판부에 불과했지만 건설관련 소송 증가에 따라 전담재판부도 계속 늘어 2004년부터 10개의 건설전담재판부가 운영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 건설사건이 몰리는 것은 대형건설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서울중앙지법 관할지역인 중구와 강남구에 밀집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소송 당사자들도 전담재판부가 많고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서울중앙지법을 선호하고 있다. 건설사 법무팀 관계자는 "계약당시에 관할 합의를 하는 경우 서울중앙지법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재판부가 많다보니 다른 법원보다 사건처리 시간도 빠르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건설전담부중에서는 민사 19부의 재판장을 맡고 있는 이원일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4기)를 비롯,

박형남(23부·사법연수원 14기), 김정배(24부·14기), 안영길(27부·14기), 권택수(28부·14기), 김명수(29부·14기) 부장판사가 각각 재판장을 맡고 있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 28일자로 부산고법으로 근무지를 옮겼다. 건설전담부에는 발주자와 시공사 간의 공사대금 분쟁, 아파트 하자보수, 계약무효 소송 등이 진행중이다. 특히 소송가액이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에 이르는 등 규모가 큰 사건이 많다.

또 하자 유무 판단 등 사실관계 확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감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건축하자감정서의 경우 1,000페이지가 넘는 경우도 많아 감정내용을 파악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건설전담부의 한 부장판사는 "감정서에 많은 내용을 담으려고 하다보니 글자가 점점 작아져 감정서 한권을 읽고 나면 머리가 아플 지경"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또 "방대한 양의 감정서를 제한된 시간에 모두 파악하기는 곤란하다"며 "충분한 주장을 펴는 것은 좋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따로 표시하는 방법 등으로 재판부의 부담을 줄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록과 감정서가 너무 두꺼워 책상에 앉아서 읽기가 곤란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한 판사는 "일반사건보다 평균 서너배 정도 두껍다 보니 판사실에 쌓인 기록을 보고 있다면 마치 문서터미에 파묻힌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다"고 말했다. 감정비용이 만만치 않고 시간도 오래걸려 법원 소속 조정위원들이 직접 감정을 하는 이른바 '간이감정' 제도를 도입했지만 최근에는 간이감정을 이용하는 당사자가 많지 않은 편이다.

또 지난해 7월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규정한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된 이후에는 하자보수 사건이 급격하게 줄었다. 토목·건축 등 전문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사건



이 많기 때문에 두달에 한번씩 건설전담 판사들이 모여 실무연구회를 갖는다.

2002년 6월 결성된 건설실무연구회는 실무상 논의되는 쟁점에 대해 토론해 왔으며 올 2월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모아 '건설재판실무논단' 을 펴내기도 했다.

전문분야를 다루다 보니 사건의 흐름을 익히는데도 시간


이 많이 걸려 전담부에 배속되기 이전에 건설사건을 많이 다뤄보지 않은 판사는 기록검토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한 부장판사는 “올 초 정기인사때 건설전담부를 처음 맡았는데 아직까지도 적응이 잘 안된다”며 “건설전담부를 거쳐간 선배법관들이 실무연구회를 통해 노하우를 많이 남겨놓아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GEOGENY
CONSULTANTS
GROUP

the Total Solutions of
GEOTECHNICS

(주)지오제니 컨설턴트는 21세기 대한민국 지반기술의 표준을 만들어 나가는 기업입니다. 기술은 곧 기업의 경쟁력입니다. 지오제니 컨설턴트는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현장경험을 통해 건설환경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최상의 기술과 품질을 만나보십시오

 서울시 서초구 방배4동 807-2 무문빌딩 2층
전화 : 02-3472-2261 팩스 : 02-3476-8057
<http://www.geogeny.biz>

**토 질 기술 사회의 영원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텍셀녹화토 설계 및 시공

Arch 턴넬 설계 및 시공

 **주식회사 현이앤씨**
Hyun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Phone : 0502-066-3333, 02-322-0034~5
Home : www.henc.co.kr

- 기초보강 마이크로파일
- 부력대항 영구앵커
- 사면보강 강연선, 강봉앵커
- 재진장형 앵커

 독일 DYWDAG SYSTEM사와
기술 제휴 협력시공업체

 (주)토탈지오이앤씨 TEL 02) 2057-9099, 031) 476-9009 FAX 02) 6008-7122

WWW.TotalGeo.co.kr Email : tgenc@chol.com